

의안번호	2210232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5. 7. 11.
추 계 번호	25A2692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제1항), ②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안 제7조), ③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데(안 제23조)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9,000만원(연평균 9,8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무역기술장벽 대응 종합계획 수립 (안 제6조제1항)	35	—	—	—	—	35	7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3	3	3	3	3	15	3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기념행사 실시(안 제23조)	88	88	88	88	88	440	88
합계	126	91	91	91	91	490	98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기술규제가 무역기술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기술장벽을 축소하기 위한 모범규제관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공유·교환·전파 및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1항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종합계획에는 ①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②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③양자 간 또는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의 협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종합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무역기술장벽 대응 종합계획 수립·시행,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를 설치(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8조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할 수 있음 (제1항) 질의처는 ①국내기술규제의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통보, ②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문서의 접수 및 보급, ③특정무역현안에 대한 대응 및 세계 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 참석 등의 업무 수행(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1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 기술장벽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①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협정의 협상, 이행 및 운영의 점검, ②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의 개발·채택 및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의 및 산업계 지원, ③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 관련 정보교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13조 (무역영향분석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1)에 따른 통보대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내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의무규정

1) 안 제9조(통보문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의 제정·개정이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문서(이하 “통보문”이라 한다)와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기관의 지침 및 권고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지침 및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적합성평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4조 (실태조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8	안 제15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국내기술규제의 성문표준 인용 정보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고, 통보문의 통보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6조 (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7조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의 실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9조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20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21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22조제6항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둠(제1항) 종합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제2항) 종합지원센터는 ①국내기술규제 개선·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②국내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현황 등의 자료 수집·조사·번역 및 분석 업무의 지원과 관련 통계의 작성, ③제9조 제3항 ²⁾ 에 따른 검토 업무 지원 등을 수행(제5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16	안 제23조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국민에게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무역기술장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5일을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로 정함(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적이 있는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9조(통보문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의 제정·개정이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문서(이하 “통보문”이라 한다)와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기관의 지침 및 권고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지침 및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적합성평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의 제정·개정이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을 경우 지체 없이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5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1항)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6조제1항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
3	안 제7조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	—
4	안 제8조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³⁾ 에 따라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무역기술장벽 공식 질의처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공식 질의처 운영

4)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11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 기술장벽 대응)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기 실시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사업명(회계):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일반회계) - 내용: FTA TBT 위원회 및 현지 규제당국 직접 방문 등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 현안을 적기 해소 - 사업방식: 직접수행 - 2024년도 예산: 230백만원
6	안 제13조 (무역영향분석 등)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영향분석의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기관을 지정하는 등 외부 기관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내기술규제 신설·강화 수요를 알 수 없고 외부위탁 등을 통해 무역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될 사항이 얼마나 있을지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제3항제8호⁴⁾에 따라 시행되는 기술규제영향평가에 무역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무역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
7	안 제14조 (실태조사 등)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기 실시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사업명(회계):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일반회계) - 내용: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및 지원 관련 기업 실태조사 - 사업방식: 출연 · 피출연기관: TBT종합지원센터(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 2024년도 예산: 20백만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5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기 실시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사업명(회계):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일반회계) - 내용: Know TBT 종합지원 포털 운영 - 사업방식: 출연 · 피출연기관: TBT종합지원센터(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 2024년도 예산: 90백만원 * 참고로, Know TBT 포털은 해외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보만 제공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정안에서 시스템 구축 대상으로 규정한 국내기술규제의 경우 행정규제의 일부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성문표준 인용 정보 등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를 통해 제공 중
9	안 제16조 (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 안 제22조제6항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기 실시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사업명(회계):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일반회계) - 내용: WTO에 통보된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문 입수 및 분석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수출기업에 전파 - 사업방식: 출연 · 피출연기관: TBT종합지원센터(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 2024년도 예산: 6,035백만원
10	안 제17조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안 제19조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기 실시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사업명(회계):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일반회계) - 내용: 인도, 중국 및 아세안 등 주요수출국 및 수출유망국으로의 수출 지원을 위해 현지 상담실 운영 및 설명회 개최, 맞춤형 컨설팅, 기술표준 교육 및 홍보 실시 - 사업방식: 직접수행 - 2024년도 예산: 1,324백만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기 실시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사업명(회계):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일반회계) - 내용: TBT 연구자 및 전문가를 발굴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대응역량 구축 및 리더십 강화 - 사업방식: 직접수행 - 2024년도 예산: 550백만원
12	안 제20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기 실시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사업명(회계):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일반회계) - 내용: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선도·신흥 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사업방식: 직접수행 - 2024년도 예산: 180백만원
13	안 제21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기 실시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사업명(회계):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일반회계) - 내용: 주요 수출 산업군별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전파하고, 관련 애로사항 수렴 및 신속 대응책 마련 - 사업방식: 출연 · 피출연기관: TBT종합지원센터(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 2024년도 예산: 80백만원
14	안 제23조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	—
15	안 제25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보조사업비 및 위탁사업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위탁 대상 사업의 내용 등 비용추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 수 없어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①무역기술장벽 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제1항), ②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 실시(안 제23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6조제1항⁵⁾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안 제7조⁶⁾에 따른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해당 추계비용은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23조⁷⁾에 따른 기념행사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최 주체이나, 여기에서는 정부가 개최하는 기념행사 비용만을 추계하고 해당 비용은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6조제1항) 종합계획 수립 비용으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종합계획 수립 시 수행한 연구용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⁸⁾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고 추계기간 동안 시행 당해 연도인 2026년에만 연구용역비가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7조)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5)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안 제7조(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①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를 둔다. (각 호 생략)

7) 안 제23조(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① 국민에게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무역기술장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5일을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적이 있는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8)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의 수는 12명, 회의 횟수는 연 1회로 가정하며,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9)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안 제7조제2항¹⁰⁾에 따른 최대 정수인 15명으로 가정
 - 총 15명 중 제정안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위원은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3명으로 하고,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은 위원 정수 15명에서 위 3명을 제외한 12명으로 가정
 - * 안 제7조제3항제1호는 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소관 기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외교부의 경우 다자양자 경제 외교와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안 제19조¹¹⁾에 따른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과 관련된 일부 지원 사무를 소관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
 -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¹²⁾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인 위원 3명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회의 횟수는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을 고려하여 연 1회로 가정¹³⁾

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10) 안 제7조(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안 제19조(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2)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1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자문위원회 운영 사례

위원회명	설치목적	기능	회의실적(회)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통상조약의 원활한 체결·비준을 지원하고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피해 대응 지원	· FTA 체결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의견수렴, 사회적 갈등 조정 · FTA 체결·비준 동의 등 FTA와 관련된 국회활동 지원,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 등	서면 1회

주: 회의 개최실적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실적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24.8.

* 안 제7조제1항¹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 준용하려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경우 FTA 등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와 기능상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위원회의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23조) 기념행사 실시 비용으로는 행사 개최를 포함하여 포상·표창 수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액으로 추계하는 것으로 가정

- 기념행사 실시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 중인 다른 기념행사의 소요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
- 안 제23조¹⁵⁾는 매년 6월 25일을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매년 발생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14) 안 제7조(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①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제도의 개선
3. 무역기술장벽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5) 안 제23조(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① 국민에게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무역기술장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5일을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적이 있는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제1항)

- 종합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한 “무역안보 발전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소요된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2026년에만 국가재정으로 3,500만원(연평균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¹⁶⁾

[표 2]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무역안보 발전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2021	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3]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안 제6조제1항)	35	-	-	-	-	35	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민간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으로 총 1,500만원(연평균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민간위원 수(12명) × 회의 횟수(1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300만원

16) 준용하려는 사례가 2021년, 추계연도가 2026년임을 고려하여 물가 및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산출

[표 4]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제1항)	3	3	3	3	3	15	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기념행사 실시(안 제23조)

- 기념행사 실시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기념행사의 예산 편성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가 재정으로 총 4억 4,000만원(연평균 8,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5]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기념행사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기념일명	사업 방식	피보조기관	2025년도 예산
수소의 날	보조	수소융합얼라이언스	83
중견기업인의 날	보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93
평균			8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6]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기념행사 실시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기념행사 실시 (안 제23조)	88	88	88	88	88	440	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념행사 실시 비용은 유사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